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2월 26일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의택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간 T/F팀으로 운영되던 "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추진단"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여 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전환·설치하여 구민 숙원사업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1) 구본청 주민생활국에 "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추진단"을 신설(안 제3조의2)

2) 신설 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4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○ 동 일부개정조례안은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T/F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"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" 이 그간 자문단 위촉 및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토론회 및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,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, 건축설계 공모·착공 등 추진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○ 현재 임시기구(T/F팀) 조직으로서는 건축설계 및 착공, 다양한 여론수렴 등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, 중앙정부기관, 서울시, 교육기관, 한국중부발전(주), 서울화력본부 등 대외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식기구로 격상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어

○ 안 제3조의2(한시기구)를 신설하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국에 한시적으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을 두고, 안 부칙 제2조에 기구의 존속기간은 2014년 4월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상위법인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와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, 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, 제21조(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)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및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